시설위원회규정 3-1-7

규정번호 3-1-7
제정일자 1993.9.1
최근개정 2026.7.20
개정차수 19차 개정
관리부서 기획평가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제반 시설물의 신·증축, 개·보수 등 중요 시설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설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목실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학혁신본부장, 평생교육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학술정보원장, 학부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중에서 위촉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03., 2018.08.27., 2025.3.31., 2026.5.18.)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교 직제규정 제7조(직무대행·협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5.18.)

② <삭제(2026.5.18.)>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4조(회의소집) 시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심의사항) 시설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시설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
2. 교육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공사시공에 따른 공정 확인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공사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
5. 교육시설의 시설활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
6. 기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25.12.1.)

제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에 대한 해당 업무부서 팀장이 간사로 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2026.7.20.)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7> <생략>

<8> 시설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①, 제4조①, 제6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9> - <102> <생략>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5> <생략>

<6> 시설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항 중 “계열부장”을 각각 “학부장”으로 하고, 제8조의 “기획홍보과장”을 각각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

<7> - <49>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2> <생략>

<3> 시설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항의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 교학부장”을 각각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으로 하고, 제7조의 “기획홍보팀장”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4> - <30>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2항)

부 칙(직제규정) <2025.3.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생략)

<2> 시설위원회규정(3-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항의 “평생교육원장”을 “평생교육본부장”으로 한다.

<3> - <17>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항, 제3조제1항·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7조)